기존 거주지국을 떠날 때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창업자가 이주로 절약하는 세금은 떠나는 나라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제 실무에서는 네 개의 출신 관할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독일

독일은 법인 지분을 최소 1% 이상 보유한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대외세법(Außensteuergesetz, AStG) § 6에 따라 그 지분의 간주 처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세금은 신청 시 7년간 연부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7년 이내에 돌아오면 취소됩니다. 이 기간은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1] 직접 보유한 토큰은 지분이 아니므로 AStG § 6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정분을 독일 GmbH를 통해 보유하거나 독일 영업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창업자는 정면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스위스나 싱가포르로 출국하면 이익이 확정됩니다. § 6 외에도, 독일의 AStG § 2에 따른 확장된 제한납세의무는 독일에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전 거주자가 저세율 관할로 이주하는 경우 10년간 그를 독일 과세망 안에 둡니다. 독일 행정당국은 이 목적상 스위스의 정액과세 납세자를 저세율 과세자로 취급합니다.[2] 독일–스위스 조세조약은 자체 규정을 더합니다. 스위스로 이주한 사람은 출국 연도와 그 후 5년 동안 독일 원천소득에 대한 독일 과세에 계속 노출됩니다. 스위스 정액과세 납세자는 모든 독일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원천소득을 통제계산에 포함하는 수정 정액과세를 선택하지 않는 한 조약상 거주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3] 취득 후 1년 이내에 매도한 토큰은 독일에서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EStG) § 23에 따른 사적 양도이익으로 과세됩니다. 매도 전에 독일을 떠난 창업자는 매수 후 1년 기간 안이라 하더라도 거주 종료 후에 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AStG § 2가 적용되고 그 이익에 독일과의 연결점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4]

영국

영국 거주자가 출국한 후 해외에 있는 동안 출국 전부터 보유하던 자산에서 이익을 실현하면, 귀국 연도에 그 이익에 대해 과세됩니다. 이 규칙은 비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이고, 그 사람이 출국 전 7개 과세연도 중 최소 4개 연도에 영국 거주자였던 경우에 적용됩니다.[5] 이 규칙은 3년간 추크나 싱가포르로 이주하여 락업 해제 기간에 매도한 뒤 돌아오는 창업자에게 함정이 됩니다. 5개 과세연도 전체를 넘겨 해외에 머무르거나 출국 후에 토큰을 취득한 창업자에게는 함정이 아닙니다. 2025년 4월 6일부터 송금주의가 4년간의 해외 소득 및 이익(FIG) 제도로 대체된 것은 영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떠나는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귀국하는 창업자가 더 이상 이익을 해외에 두는 방식으로 과세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는 있습니다.[6]

홍콩과 미국

홍콩에는 자본이득세, 출국세, 개인의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홍콩을 떠나는 거주자에게 남는 문제는 그의 토큰 활동이 홍콩에서 영위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뿐입니다. 해당한다면 거주 기간에 대해 실현 이익에 대한 15%의 사업소득세가 여전히 부과됩니다.[7] 미국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미국 시민과 장기 영주권자는 어디에 살든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므로, 창업자가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추크나 싱가포르로의 이주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 경우 대상 국적포기자(covered expatriate)는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s. 877A에 따라 국적포기 전날 기준으로 토큰을 포함한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전 세계 자산에 대해 시가평가 과세를 받습니다.[8] 따라서 미국 창업자에게는 개인의 이주보다 제II장부터 제V장까지의 법인 및 트레저리 설계가 더 유용합니다.

주

1. Außensteuergesetz (AStG), § 6 제1항부터 제4항, 2021년 6월 25일자 ATAD-Umsetzungsgesetz에 의해 2022년 1월 1일부터 개정; 2025년 1월 1일부터 Jahressteuergesetz 2024로 신설된 AStG § 6 제1항 제2a문에 따라 투자펀드에 대한 상당한 지분으로 확대. ↩
2. AStG, § 2 제1항 및 제2항; 독일 연방재무부, 2023년 12월 22일자 Anwendungserlass zum Außensteuergesetz, 제2.2항(스위스의 지출 기준 과세를 우대 과세로 봄). ↩
3. Convention between Germany and Switzerland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of 11 August 1971, SR 0.672.913.62, 제4조 제4항 및 제6항. ↩
4. Einkommensteuergesetz (EStG), § 22 제2호 및 § 23 제1항 제1문 제2호; 가상자산의 소득세 취급에 관한 독일 연방재무부 2025년 3월 6일자 서한(2022년 5월 10일자 서한 대체). ↩
5. HM Revenue & Customs, Helpsheet HS278, "Temporary non-residents and Capital Gains Tax (2026)", 2026년 4월 6일 갱신; Taxation of Chargeable Gains Act 1992, s. 1M. ↩
6. Finance Act 2025, Sch. 9 이하(송금주의 폐지 및 2025년 4월 6일부터 4년 FIG 제도 도입). ↩
7. Inland Revenue Ordinance (Cap. 112), s. 14; Inland Revenue Department, Departmental Interpretation and Practice Notes No. 39(2020년 3월 개정), 디지털 자산에 관한 제27항부터 제30항. ↩
8. Internal Revenue Code, s. 877A(대상 국적포기자에 대한 시가평가 제도: 순자산 200만 미국달러 이상, 또는 연평균 순소득세액이 물가연동 기준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액 초과, 또는 5년간 납세의무 준수 확인 불이행; 제외 금액은 매년 물가 연동).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